

제 호

기후변화감시에측전문기관 지정서 (해양·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)

- 기관·단체명:
- 대표자의 성명:
- 사무실 소재지:
- 수행사업의 종류: [] 연구·개발 사업 [] 전문인력 양성사업

「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에측전문 기관(해양·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)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 직인